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및 현장조사 절차 규정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826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계종사자 처우개선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2
2.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26조제2항~제5항)	5
3. 실지조사를 현장조사로 변경 등 (안 제26조 등)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종사자가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실지 조사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실지 조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명칭과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한편, 실지 조사의 방법·절차·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종사자의 현장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통계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가 미비하여 통계조사인력의 육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함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6조).

II. 검토의견

1.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의무 규정(1항) -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통계종사자 임금의 통계작성전담공무원 보수수준 도달을 위한 노력의무 규정(2항) -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3항)

개정안은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통계종사자 가운데 사업장 또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각종 인권침해 위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그에 따라 중도이탈율이 상당한 상황이며 실제로 통계조사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 간 도급조사원 중도포기 현황]

연도	도급조사원 수	중도포기	
		인원(명)	비율(%)
2020	8,649	381	4.4
2021	10,799	361	3.3
2022	10,115	454	4.5

출처: 통계청

[2022년 통계조사원 인권침해 주요 사례]

유형	내용
조사방해	조사내용에 대해 조사원에게 강력 항의하고 이후 다른 가구에 대한 조사 방해
전화상 욕설	방문안내증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조사원에게 10회 이상 전화 및 욕설·폭언·협박성 문자 발송

출처: 통계청 자료 재정리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통계종사자의 중도이탈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통계종사자의 보수가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통계조사원과 통계공무원 간 수행업무, 전문성 등이 상이한 측면이 있고 예산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조사원 간 보수 수준 일치 노력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장의 노력의무 부과 필요성이 있으므로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력 의무 부과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입장이나, 통계작성기관이 각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경우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고, 통계종사자간 업무의 난이도·전문성 차

이로 동일한 보수 지급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수 관련 부분에 관하여 수용 곤란 입장임.

2.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6조 제2항~제5항)

현 행	개 정 안
○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제26조제2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6조제2항)
○ <신 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발송(안 제26조제3항) - 현장조사목적(제1호) - 현장조사기관과 장소(제2호) - 통계종사자의 성명과 직위(제3호) - 현장조사범위와 내용(제4호) - 제출자료(제5호) - 현장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제6호) -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7호)
○ <신 설>	○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안 제26조제4항) - 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제1호) -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제2호)
○ <신 설>	○ 관계인은 통계종사자로부터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함(안 제26조제5항)

현행법은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개정안은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장조사의 범위 및 시각 제한 규정, 현장출입조사서 발송 근거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함.

개정안을 통하여 현장조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출입조사서의 발송으로 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에 통계조사를 예고함으로써 통계조사원이 겪는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일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6조제2항은 현장조사 등을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뿐 아니라 가구 방문도 많으며¹⁾, 현행 제26조제2항은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인터넷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구 대상 조사 및 비대면 조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둘째, 안 제26조제3항은 현장출입조사서를 관계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농작물 면적조사의 경우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아닌 농지 직접 방문을 통해

1)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생활시간조사 등의 사회통계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을 위한 농지 소유자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함.

또한 통계 조사의 표본 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통계 현장조사에 대해서 현장출입조사서를 발송할 경우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현재 통계청은 통계조사 협조공문을 필요한 경우에 발송하고 있는 바, 법으로 현장출입조사서 송부를 규정하기 보다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이 현장 수요에 맞게 선별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현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주요 통계조사 표본 수]

(단위: 만 개)

조사 명	표본 수
전국사업체 조사	686
광업제조업 조사	8
서비스업 조사	25
건설업 조사	8.3

출처: 통계청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주요 현장조사 협조공문 송부현황]

조사통계명	조사주기	조사시기	송부대상
소상공인실태조사	1년	6~7월	사업체
경제총조사	5년	6~7월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1년	2~3월	사업체
경제통계 통합조사	1년	6~7월	사업체/관련 협회
기업활동조사	1년	6~7월	사업체
사회조사	1년	5월	가구/아파트관리사무소
농림어업조사	1년	12월	가구

출처: 통계청 자료 재정리

셋째, 개정안은 현장조사를 해뜨기 전 또는 해가 진 뒤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편, 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및 사업체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현장조사가 모든 시각에 허용되는 것은 지나치게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현재도 현장조사 출입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가 지거나 해가 뜨기 이전에 현장조사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비해 통계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임.

넷째, 안 제26조제5항은 관계인의 성실한 조사응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계법」 제32조²⁾에서 이미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6조제5항을 신설할 실익은 없다고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은 자료 요구 방식을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 비대면 자료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은 우편 발송의 어려움 등으로 실지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실지조사 시각을 제한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3. ‘실지조사’를 현장조사로 변경 등(안 제26조 등)

주요내용
○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변경 (안 제3조제7호) ○ ‘실지조사’→‘현장조사’ 변경(안 제26조)

개정안은 ‘통계종사자’에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이미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계작성기관에 고용되어 통계조사를 하는 통계조사원은 이미 통계종사자에 해당하는 바, 개정 실익은 없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실지조사를 현장조사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지조사’에서 실지(實地)라는 표현이 ‘실제의 상황’이나 ‘사물 등이 현재 있는 곳’을 의미하여 통계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사행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현장조사’로 개정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³⁾, 「철도사업법」⁴⁾, 「주택도시기금법」⁵⁾등에서 ‘실지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법」⁶⁾, 「광업법」⁷⁾, 「재해구호법」⁸⁾ 등에서는 ‘현장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중략)...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철도사업법」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 5) 「주택도시기금법」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중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6) 「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7) 「광업법」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8) 「재해구호법」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말한다(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생략) <u><신설></u>	7.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u> <u>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종사자의 보수가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6조(<u>실지조사</u>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 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 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③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6조(<u>현장조사</u>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의 사무 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 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 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목적 2. 현장조사기간과 장소 3. 통계종사자의 성명과 직위

현행	개정안
<신설>	4. <u>현장조사범위와 내용</u> 5. <u>제출자료</u> 6. <u>현장조사거부에 대한 제재</u> (<u>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u>) 7. <u>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u>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관계인(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u> 2. <u>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u> <신설> ⑤ <u>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계종사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신 설></u>	과 같음) ⑧-----제7항----- ----- ----- -----. ⑨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50